

달콤.엔 (Dal.Komm.N)

정 보 공 개 서

[달콤.엔(Dal.Komm.N)]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5, 5층(세광빌딩)

[전화번호] 1661-1399

[팩스번호] 070-5096-0101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첨문서 : 표준재무상태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다날에프엔비	달콤.엔(Dal.Komm.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5, 5층(세광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3. 1. 31	2013. 2. 1	심순열	1661-1399	070-5096-0101
	법인등록번호	131111-0333341	사업자등록번호	144-81-0935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심순열	달.콤 / 달콤.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5, 5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순열	1661-1399	070-5096-0101
이사	박성찬	달.콤 / 달콤.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5, 5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순열	1661-1399	070-5096-0101
이사	민상기	달.콤 / 달콤.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5, 5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순열	1661-1399	070-5096-0101
감사	백현숙	달.콤 / 달콤.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5, 5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순열	1661-1399	070-5096-010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내역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달콤.엔 (Dal.Komm.N)	.
상 호	달콤.엔(Dal.Komm.N)커피 ____점	.
상표(서비스표)	Dal.Komm 	출원번호 : 40-2024-0230562 출원인 : 주식회사 다날에프엔비
	달콤.엔	출원번호 : 40-2024-0230563 출원인 : 주식회사 다날에프엔비

※이하 본 정보공개서에서는 한글명칭(상호) [달콤.엔]으로 기재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4년	4,274,794	18,421,995	-14,147,201	10,067,837	-1,466,265	-1,884,996
2023년	5,828,325	18,116,567	-12,288,242	11,609,891	-2,508,736	-3,358,801
2022년	11,553,676	20,446,626	-8,892,950	12,841,403	-3,081,681	-5,105,585

※ [별첨#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참조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심순열	대표이사	2023. 09. 11 ~ 현재	대표이사	사업 총괄
박성찬	이사	2020. 10. 22 ~ 현재	사내이사	경영 전반
민상기	이사	2024. 05. 24 ~ 현재	사내이사	경영 전반
백현숙	감사	2014. 06. 30 ~ 현재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4	0	5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는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본사 (주식회사 다날에프엔비)	달.콤 (dal.komm)	가맹사업	2012. 3. 30 ~ 현재	'달.콤'이라는 영업표지의 커피사업 경영 (등록번호: 2012100121)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권리인)	존속기간 만료일
Dal.Komm  (상표권)	제품 사용 및 대가 수수/광고,홍보	출원 (2024. 12. 16)	출원번호 (40-2024-0230562)	주식회사 다날에프엔비	.

달콤.엔 (상표권)	제품 사용 및 대가 수수/광고,홍보	출원 (2024. 12. 16)	출원번호 (40-2024-0230563)	주식회사 다날에프엔비	.
----------------------	---------------------------	----------------------	---------------------------	----------------	---

-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출원신청만 한 경우)에는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달콤.엔(Dal.Komm.N)] 가맹사업 현황

1. [달콤.엔]을 시작한 날 : 2025년 1월 23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4년 12월 31일)

2. [달콤.엔] 연혁

가맹본부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다날에프엔비	달콤.엔 (Dal.Komm.N)	심순열	2023.09.11 ~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5, 5층

3. [달콤.엔] 업종

영업표지	업 종	
달콤.엔 (Dal.Komm.N)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	커피, 제과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달콤.엔]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4.12.31.			2023.12.31.			2022.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	1	·	·	·	·	·	·
서울	1	·	1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달콤.엔]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4	·	·	·	·	·	·
2023	·	·	·	·	·	·
2022	·	·	·	·	·	·

6. [달콤.엔]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의 [달콤.엔]외 3년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당사 운영	주식회사 다날에프엔비	달.콤	2012100121	커피	92/23	73/20	76/9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2024년(말일) 기준 [달콤.엔]의 가맹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 [달콤.엔]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달콤.엔]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해당없음 (미운영)	.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	.	.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천원, 부가세 제외)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	
광고		(비공개)	.	.	.	
		(비공개)	.	.	.	
		(비공개)	.	.	.	
		(비공개)	.	.	.	 (비공개)
		(비공개)	.	.	.	
		(비공개)	.	.	.	
		(비공개)	.	.	.	
판촉		(비공개)	.	.	.	
		(비공개)	.	.	.	
		(비공개)	.	.	.	
		(비공개)	.	.	.	

	(비공개)	.	.	.	
	(비공개)	.	.	.	
	(비공개)	.	.	.	

11. 가맹금 예치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분당중앙업무팀 (이준범 과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0-2, 2층	031-704-1541(313)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다날에프엔비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귀하는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조치일자	조치내용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최종 법원명	판결(선고)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달콤.엔]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 아래의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소방시설공사, 인터넷개설, 영업배상보험, 기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500				
가입비	5,500	계약 체결시	반환없음 원칙	가맹점 모집 및 개점지원 목적으로 소모된 비용으로 반환 불가	가맹점의 귀책없는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당사 기준 정산 후 반환
교육비	2,200	계약 체결시	교육 시작1일 전까지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된 경우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기획관리비 /설계비	3,850	계약 체결시	도면제공 전까지	도면이 제공된 경우	도면제공시 반환되지 않음

2) 계약이행보증금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	.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합계	7,700
가입비	5,500
교육비	2,200

※ 당사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 영업개시를 위하여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예상·추정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원)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55,503	3,700			
인테리어	협력업체(권장)	19,500	1,300	계약체결시 개별 계약	소요비용 공제후 반환	
간판/사인물	가맹본부(권장)	4,400	293	계약체결시 개별 계약	소요비용 공제후 반환	4m 미만 1면기준
주방/설비	가맹본부(권장)	29,868	1,991	계약체결시 개별 계약	소요비용 공제후 반환	
가구	가맹본부(권장)	1,735	115	계약체결시 개별 계약	소요비용 공제후 반환	이동 가구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예상·추정한 것으로 점포 면적, 구조 등 상황에 따라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는 당사의 권장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당사의 설계 및 검수 대가(감리)로 매장크기(3.3㎡기준)에 따라 220,000원(부가세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전까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위 금액외의 냉난방기, 철거공사, 전기증설, 소방공사, 외부 공사, 인허가사항 등의 추가 및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부적인 비용은 계약 체결 시, 현지 매장 확인 및 실측 후 별도 제공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	-------

가맹점사업자 당사 협의	○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위치를 선정하여 오는 경우 : 기존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역권 침해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규 가맹점의 입지를 허가함. 만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입지 변경 권유 →가맹 희망자의 최종결정
	○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입지 선정을 요청할 경우 : 담당자 배정→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지역 파악→ 당해 지역내 입차등 가능한 점포 물색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통지→가맹희망자와 담당자의 현장 확인→가맹희망자의 최종 결정
	○ 가맹본부가 점포 입지를 선정해 놓은 경우 :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입지 안내→가맹희망자와 담당자의 현장 확인→ 가맹 희망자의 최종결정

※ 가맹점 입지 선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과 그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설비·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위 표의 공급업체는 권장사항으로 가맹희망자과의 협의에 따라 당사의 상표권 보호, 상품의 동일성 및 통일성 유지를 위한 기준만을 제시하며 별도의 업체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 세부 내역은 계약 체결 시 매장 현장 확인 및 실측 후 별도 안내하며, 실제 내역 및 공급업체는 당사의 업무제휴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8) 모든 가맹금 및 비용은 정해진 기일 또는 기한 까지 한 번에 전액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165,000/월	다음 월 10일	반환없음		개점일과 계약종료일이 있는 월의 경우 월단위 일할 계산하여 지급
광고분담금		분담기준 참조 (39~40페이지)	광고 실시 전	광고 시행 전 요청시	광고 시행 이후	
판촉분담금			판촉 실시 전	판촉 시행 전 요청시	판촉 시행 이후	
교육훈련비		분담기준 참조 (46페이지)	비용 통지 후 7일 이내	교육 전 계약해지	교육 실시 후 반환불가	
지연이자		연6%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기일을 경과했을 시 부담
영상서비스 (사이니지)		27,500원/월	다음 월 10일			
매장 음악서비스		월 9,900원	개별청구			가맹점사업자 선택사항 기본비용은 비신탁 이용료이며, 신탁으로 사용시공연사용료 & 공연보상금 추가 청구 됨
POS사용료	지정업체	월 33,000원	개별계약체결	개별계약에 따름	개별계약에 따름	점주가 직접 지급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또는 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인 의사인 경우 가맹본부 부담 없음

○ 시장상황, 시세 변동 등 부득이한 경우 비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물품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전년 기준 [달콤.엔]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한 감독을 실시합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회계처리	실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정기 감독(반기 1회) 및 수시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운영감독	매장운영, 청결, 위생, 원·부재료 관리 등	수시	

○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 경영상태 또는 위생 및 재고관리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필요시(수시) 점포를 감독(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영업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고 당사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점포의 현장감독을 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감독 담당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점포 개선 및 점포위치 이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하여야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 계약 체결의사가 없는 경우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기존 계약관계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가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정도에 따라 가맹금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객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계약에 한하여 귀책사유 등을 감안 한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계약에 한하여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한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가맹점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와 기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 양수인은 정보공개서 상의 가입비, 교육비 등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맹점의 모든 권리가 즉시 소멸하며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즉시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당사의 영업 비밀, 고객정보를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등 당사의 사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반환 대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상계하고 추가로 법적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개봉상태, 식품여부,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는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주요 물품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은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달콤.엔]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상품, 용역, 서비스, 상품, 이익권 또는 부채권 등의 권리 또는 이익의 취득에 특수관계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주)다날	계열사		(비공개)	 (비공개)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가 [달콤.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받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2) 당사가 [달콤.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3)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표 참조	3)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표에 기재된 이외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2회 위반 이상	지정 상품·물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두 경고 또는 서면 시정 요구	· 1회 서면 시정요구에도 미개선시 : 가맹점 운영권 중단 · 2회 서면시정 요구에도 미개선시 : 가맹계약 해지	

- 귀하가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합니다.
- 가맹본부의 신메뉴개발로 인한 상품 및 용역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다음의 지정된 거래상대방(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제한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다른 사업자 달콤.엔의 다른 가맹점사업자 영업비밀 누출가능성이 있는자	당사 및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물품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표의 상품	제한 거래상대방에게 판매 및 무상공급 금지	1회 위반: 물품공급 중단 및 서면 시정요구 2회 이상 위반: 가맹사업법에 의한 계약 해지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원)		가격통보방법	비고
		HOT	ICE		
시그니처	석류 얼그레이티	3,800	3,800	홈페이지, 홍보인쇄물, POP, 디지털 메뉴보드 등	2024. 12. 31.기준
	유자 민트티	3,800	3,800		
	오곡라떼	3,700	3,700		
	바나나라떼	4,800	4,800		
	샤인 모히또 스무디		3,900		
	체리배 스무디		3,900		
커피	(HOT) 아메리카노	1,300			
	(ICE) 아메리카노		1,800		
	카푸치노	2,900	2,900		
	카페라떼	2,900	2,900		
	바닐라라떼	3,400	3,400		
	카라멜마끼아또	3,700	3,700		
	더블 모카 라떼	3,900	3,900		
	콜드브루	3,500	3,500		
	콜드브루라떼	4,000	4,000		
	콜드브루 아인슈페너	4,000	4,000		
주스/에이드	레몬에이드		3,500		
	자몽에이드		3,500		
	청포도에이드		3,500		
	갈라만씨에이드		3,500		
	한라봉 에이드		3,700		
	석류 에이드		3,700		
	스트로베리 에이드		3,700		
	사과당근 비타민주스		4,000		
	레몬밀싹 비타민주스		4,000		
	자몽주스		4,000		
	복숭아 아이스티		3,000		
	피치 아샷추		4,000		
차	레몬진저 캐모마일티	3,800	3,800		
	유자 엘더베리티	3,800	3,800		
	대추쌍화차	3,800	3,800		
	배도라지차	3,800	3,800		

	유자차	3,300	3,300		
	얼그레이	2,500	2,500		
	루이보스	2,500	2,500		
	엘더베리	2,500	2,500		
	캐모마일	2,500	2,500		
	페퍼민트	2,500	2,500		
	하동녹차	2,500	2,500		
밀크 베버리지	그린티라떼	3,700	3,700		
	더블 초콜릿 라떼	3,700	3,700		
	스트로베리 라떼	3,700	3,700		
	얼그레이 밀크티라떼	3,700	3,700		
	골드 고구마 라떼	3,700	3,700		
아이스 블렌디드	바닐라 블렌디드		3,900		
	초콜릿 블렌디드		3,900		
	그린티 블렌디드		3,900		
	그릭 요거트 블렌디드		3,900		
	스트로베리 요거트 블렌디드		4,500		
	망고 블렌디드		3,900		
	청포도 블렌디드		3,900		
시즌	홍시 요거트 라떼		4,800		
	리얼 홍시주스		4,800		
	피스타치오 초코라떼	4,800	4,800		
	프렌치마롱 카페라떼	4,800	4,800		
	윈터 시그니처 뱅쇼	4,800			
	윈터 시그니처 샹그리아		4,800		
	레드벨벳 라떼	4,800	4,800		
	티라미수 커피	4,800	4,800		
	스트로베리 티라미수 라떼		4,800		
	스트로베리 애플 블렌디드		4,800		
	스트로베리 모히또 에이드		4,800		
	스트로베리 유자차 (Only Hot)	4,800			
	스트로베리 주스		4,800		
	베이커리	초코 마카롱 도넛	1,900		
스트로베리 마카롱 도넛		1,900			
허니버터브래드		5,500			
크로크무슈		4,300			
바질치즈 치아바타		4,800			
미트볼 칠리치즈 샌드위치		6,200			
에그포테이토모닝롤		4,300			
더블햄모짜렐라샌드위치		5,800			
햄&에그로메인샌드위치		5,800			
마리게리따 치킨파니니		5,800			
불고기크림 바게트		5,800			

오리지널 핫도그	3,800	
갈릭 핫도그	3,800	
갈릭바게트볼	6,000	
얼그레이레몬스콘	3,800	
생크림스콘	3,800	
크랜베리아몬드스콘	3,800	
플레인 베이글	2,600	
어니언 베이글	2,600	
마늘빵(6개입)	2,500	
커피번	3,500	
딸기맘모스	4,500	
사과맘모스	4,500	
에그타르트	2,100	
브라우니	2,500	
츄러스(바바리안크림)	2,500	
초코 슈스틱	2,500	
플레인 리코타치즈베이글	3,800	
스위트녹차쌀롤	3,500	
스위트초코쌀롤	3,500	
스위트쌀롤	3,500	
우유크림 오믈렛	2,200	
초코생크림 오믈렛	2,200	
슈크림 오믈렛	2,200	
마카롱 바닐라	2,500	
마카롱 초코	2,500	
마카롱 딸기	2,500	
마카롱 모카	2,500	
마카롱 캐러멜	2,500	
얼그레이생크림케이크	5,200	
오레오우유케이크	5,300	
초콜릿케이크	5,800	
당근케이크	6,300	
그릭요거 치즈케이크	5,200	
클래식폴케이크	5,600	
원터케이크 브레드	6,500	
스트로베리 카스텔라(우유크림)	4,300	
스트로베리 카스텔라(딸기크림)	4,300	
스트로베리 아이스슈 (우유크림)	3,500	
스트로베리 아이스슈 (초코크림)	3,500	
스트로베리오믈렛(우유)	2,500	
스트로베리오믈렛(초코)	2,500	
스트로베리오믈렛(슈크림)	2,500	

	스트로베리 페스츄리	6,900		
	도라에몽 단팥우유크림빵	3,300		
	솔티카라멜 파운드케이크	4,800		
	무화과 파운드 케이크	4,800		
병음료	라우치 망고	3,000		
	라우치 오렌지	3,000		
	라우치 딸기	3,000		
	라우치 살구	3,000		
식품 MD	다크 초콜릿칩쿠키	1,500		
	오트밀 월넛 쿠키	1,500		
	스위트콘 라이스칩	2,500		
	씨솔트 라이스칩	2,500		
	달달 바삭 크롱지	1,800		
	달달 갈릭 크롱지	1,800		
	잉글리시 민트 크리스탈 캔디	3,900		
	콜라보틀 크리스탈 캔디	3,900		
	스트로베리 크리스탈 캔디	3,900		
	페어드롭스 크리스탈 캔디	3,900		
	레몬 사우어 젤리	2,000		
	청포도 사우어 젤리	2,000		
	오지리널 다크 비스킷 바	1,700		
	초코&밀크 비스킷 바	1,700		
	젤리벨리 20 가지 믹스	3,000		
	젤리벨리 후르츠 믹스	3,000		
	트롤리 미니 버거 젤리	500		
콘플레이크 초콜릿	1,900			
<p>· 매장판매가격 기준이며, 배달의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p> <p>· 귀하가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p>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 및 음료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달.콤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에서 보행로 거리를 기준으로 300m ※통상적인 보행로(인도 및 횡단보도) 기준	가맹계약서 별지에 지도를 별첨하여 표시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강남이나 이에 준하는 상가밀집지역 등)은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가맹계약서 별지에 특수상권 이름 및 위치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2.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특수상권을 제외한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대체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대체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쿠팡	Smartstore.naver.com /dalkommcoffee / www.coupang.com	[달콤 X 짱구는 못말려] 짱구 콜라보 세트 포션커피 디오라마 아크릴 스탠드 2024 년 설 스페셜 기프트세트 2024 년 설 프리미엄 기프트세트 [달콤 X 붕괴 3rd] 붕괴 3rd Sweet Memories 선물 세트 [달콤 XTEAOUS] 벌꿀생강차 진한 생강차 전통차 선물용(22gX8ea) [달콤 XTEAOUS] 쌍화차오리진 진한 전통차 선물용 (22gX8ea) 달콤커피 꽃차 세트 메리골드차 선물용 답례품 (8.5gx5ea) 달콤커피 벌꿀 스틱 국내산 꿀 20 포 꿀답례품 사양벌꿀 달콤커피 게이샤 포션커피 1+1 미니 달콤커피 한라봉 허니 블랙티 홍차 미니 20g x 15ea [달콤 X 명조] 콜라보 한정판 굿즈 [달콤] 2024 년 프리미엄 추석 선물세트 [달콤] 스페셜 선물세트	비대면거래

		하동 썬차 목련 현미녹차 프리미엄 호박차
--	--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8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달콤.엔]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만[1]년입니다.
- 가맹점사업자와 본사 간 특별한 해약 사유가 없는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1년씩 자동연장(묵시적 갱신) 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요구 거절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가맹계약서 제29조)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 (가맹계약서 제30조 제1항)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22조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계약해지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가맹계약서 제22조, 제30조1항)
1.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로열티, 물품대금, 광고·판촉비 등 지급의무가 있는 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임차권 종료 등의 사유로 정당한 사용권리가 상실 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2회 이상 통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통지하는 경우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 품질관리기준, 운영매뉴얼, 세부운영규칙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 또는 동의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의 지정된 물품을 임의로 다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경업금지 위반 및 영업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 한 경우
1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상 의무위반에 대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12. 계약체결일로부터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개점이 되지 않을 경우. 단, 당사자 간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즉시해지 사유 (가맹계약서 제30조 제2항)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

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 협의 후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및 효력
상호 협의 → 수정계약서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통지 → 계약체결 → 체결된 서면계약서 제공	수정 (서면)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6) 당사가 정한 물품 공급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공급의 중단 (가맹계약서 제22조)
<p>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전에 해당사유를 적시한 서면으로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물품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로열티, 물품대금, 광고·판촉비 등 지급의무가 있는 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임차권 종료 등의 사유로 정당한 사용권리가 상실 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2회 이상 통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통지하는 경우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 또는 동의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의 지정된 물품을 임의로 다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 가맹점사업자가 경업금지 위반 및 영업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 한 경우
- 1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상 의무위반에 대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②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물품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 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으로 7일을 초과하여 영업을 중단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6. 본 계약의 내용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없이 5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가맹본부는 물품 등의 공급중단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재공급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중도합의해지

- 귀하의 개점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도합의해지 위약금 (가맹계약서 제31조)

[월평균 로열티 + (월평균 물품대금 x 35%)] x 잔여 계약개월수

※ **월평균 로열티** : 계약 해지일 이전 12개월(영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 개시일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로열티의 월 평균가를 말하고, 월평균 물품대금이란 같은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한 원·부재료 등 물품의 구매대금의 월 평균가를 말하고, 잔여 개월 수란 이 계약 해지일부터 당초의 (연장)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말한다.

○ 중도해지 의사는 해지일 3개월전까지 서면에 의하여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가맹본부의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검토(양수인 양수 희망 신청서 및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기존 계약기간 내에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부담 비용(실비,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운영권을 받으려는 자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사망 상속)	가맹본부 승인 후 가능	모든 권리의무	운영권 희망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 검토(운영 희망 신청서 및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및 영업비밀 보호의무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달콤.엔]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가맹사업자가 하는 경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비밀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커피 전문 업체 및 커피전문점 (커피 및 각종 음료와 디저트를 함께 판매하는 업종)	경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 승인 시 예외적 허용)	가맹점사업자의 제3자를 통한 경업행위 금지를 포함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달콤.엔]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07:00 ~ 24:00	연중 무휴

※ 세부 영업시간과 영업일은 가맹계약체결시 확정합니다.

-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영업시간과 영업일수는 당사와 협의 하에 변동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즉시해지 될 수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에 대하여 개점 점포별 상황에 따라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개점 점포별 상이	계약자 직접 근무 권장	필요시 협의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관리·감독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본사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수시	본사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본사	
회계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자료 요청 → 회계자료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반기 / 수시	본사	

○ 당사는 관리·감독에 근거하여 가맹점관리표를 작성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당사는 [달콤.엔]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광고비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75%	25%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PPL 옥외광고,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75%	25%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할인행사	행사에 따라 산정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 진행
	증정행사	행사에 따라 산정		"	"
	팸플렛 등 제작	행사에 따라 산정		"	"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할인카드 ·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서비스 시행 전 협의			

- 광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50%이상 동의하에 전체 가맹점이 진행하며 가맹점부담액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각 분담비율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간의 부담액은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 판촉행사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 동의하에 진행하며, 판촉행사의 비용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 당사의 사전승인이 있으면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단독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종업원의 영업비밀 보호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며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귀하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서 제46조)	
<p>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이나 다음 사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사유에 대하여 중복하여 모두 청구할 수 있다.</p>	
사유	위약벌
<p>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후에도 영업표지를 제거하지 않는 등 본 계약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p>	300,000원/일
<p>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된 경우. 단,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위약벌 조항 적용</p>	<p>[월평균 로열티 + (월평균 물품대금 x 35%)] x 잔여계약개월수</p> <p>※ 월평균 로열티란, 가맹계약 해지일 이전 12개월(영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 개시일부터 계약 해지일 까지의 기간) 동안의 로열티의 월 평균가를 말하고, 월평균 상품대금이란 같은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한 상품의 구매대금의 월 평균가를 말하고, 잔여 개월 수란 가맹계약 해지일부터 당초의 가맹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말한다.</p>
<p>가맹점 사업자가 설비· 기기· 장비를 가맹본부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무상대여 등 포함)받고 가맹사업자의 일방적 가맹계약 중도해지 또는 가맹사업자의 귀책으로 가맹계약이 해지된 경우</p>	설비· 기기· 장비의 무상지원금 (지원당시의 가액)
<p>가맹점사업자가 이 계약이 종료(영업양도를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등을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된 상태로 반환하는 경우</p>	3,000,000원
<p>본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물품을 매입하거나 다른 상품의 판매를 한 경우</p>	20,000,000 원
<p>본 계약의 해지절차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임의로 운영</p>	

또는 양도한 경우	
본 계약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가맹본부는 손해배상액의 채무관계를 반환 대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우선 정산하고 잔여 손해배상액은 법적절차비용을 포함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합계		5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기초상담	D-5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50~3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희망지역 입지검토 - 입지 타당성분석 및 선정	
최종 협의	- 임대차 계약 체결	D-30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가입	- 가맹금보증보험 가입	D-30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0~28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8~8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8~1
기타 준비	- 설비 및 집기 준비 - 각종 인허가사항 취득(가맹점사업자)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소요비용은 본 정보공개서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의 비용 참조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당사는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점포환경개선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p><분할지급 시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 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우수매장	12개월 이상 영업 중인 가맹점 대상 선정	본사운영방침 성실 이행 매장	연간 1회	소모비용 또는 물품 전액 당사 부담
우수사원	6개월 이상 근속중인 가맹직원 대상 선정	가맹점 6개월 이상근속직원 중 추천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연간 2회	
판매활성화 지원	고객 대상 판매촉진 이벤트 지원	없음 (전 가맹점 해당)	수시	
판촉물제작 지원	각종 판촉행사 시 소모되는 판촉물 지원	없음 (전 가맹점 해당)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	가맹점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

	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한 부분에 한함)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개점 전 교육 및 보수·특별 교육 이외의 별도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및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과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개별적인 지원 또는 경영활동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달콤.엔]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최초 교육)	이론 교육 · 회사 및 브랜드소개 · 서비스 및 고객관리 · 기타 경영방침 교육	이론 교육 (해당 점포 또는 교육장)	가맹점 개점전	필수 교육
	실습 교육 · 판매메뉴 및 서비스방법 · 점포 운영방법 · 기타 가맹점주 질문사항 · 가맹점사업자 및 직원 교육	실습 교육 (해당 점포 또는 교육장)	가맹점 개점전	필수 교육
재교육	· 신규교육 미흡사항 재교육	이론/실습	협의	신규교육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수시교육	· 신메뉴 ·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이론/실습	별도 통지	신메뉴 출시
	· 고객 불만사항 개선	이론/실습	별도 통지	3회이상 고객불만 접수시 교육수료 필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달콤.엔]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이론	7일	3,300	숙박비, 교통비, 재료비 별도
	실습			
재교육		협의	220 / 1일	
수시교육		1일	220 / 1일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신규 교육은 기한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이 연기되거나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한내 보수·특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 정한 기준에 따라 신메뉴를 판매할 수 없거나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갱신거절 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천호대로점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53 (강동 컴홈스테이 1차) B 101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0년	24년12월31일 개점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천원)	비 고
576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별첨문서]

[별첨#1] 표준재무상태표(바로 전 3개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별첨#1] 바로 전 3개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2024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